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34
----------	------

2017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김현기 의원외 12명
- 나. 제안일 : 2017년 7월 18일
- 다. 회부일 : 2017년 7월 19일
- 라. 상정일 : 제27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8월 3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현기 의원)

가. 제안이유

- 효율적인 공공갈등의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 공공갈등 관리 체계의 관련 근거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공공갈등 관리를 통해 시정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갈등 관리실태의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함(안 제18조제1항).
- 공공갈등의 예방 및 관리, 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함(안 제18조제2항).
- 공공갈등의 예방, 진단, 조정 및 교육·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치구 협력을 신설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 다. 입법예고(2017. 7. 24. ~ 7. 31.)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공공갈등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관리·점검을 위해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도록 의무화 하고(안 18조제1항,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실태 등을 점검·평가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에게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며(안 제 18조제2항 신설), 원활한 갈등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 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안 제19조 신설)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서울시는 2012년 9월 동 조례 제정 이후 ‘공공갈등진단기준’을 마련 하여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진단·관리하여 왔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최근 4년간 갈등진단 현황〉

연도	갈등진단 수	관리대상				등급제외
		계	1등급	2등급	3등급	
2017년	57	29	4	6	19	28
2016년	79	49	2	18	29	30
2015년	97	79	6	18	55	18
2014년	112	106	3	23	80	6

〈갈등 진단 등급 기준〉

- 1등급 : 시 전체 차원의 접근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결정한 사항 등
 - 공공갈등진단표 10개 항목 중 2/3(7개) 이상 해당
- 2등급 : 타부서 및 갈등조정담당관의 협력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경우 등
 - 공공갈등진단표 10개 항목 중 5~6개 해당
- 3등급 : 주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사업
 - 공공갈등진단표 10개 항목 중 4개 이하 해당

가.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의무화(안 제18조제1항)

- 안 제18조제1항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 ①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평가해야 한다.

※ 동 조례는 2012년에 제정되었으나, 동 조례 제18조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5년에 실태평가 매뉴얼이 제작·개발되어, '15년말 최초로 각 부서의 갈등관리 실태에 대한 시범 평가를 실시한 바 있음.

<최근 3년간 연도별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가대상	-	중점관리(1,2등급) 일부 시범평가	중점관리(1,2등급) 진행, 완료 사업
평가 사업수	-	10건	20건

※ 2015년 실태평가 매뉴얼 제작·개발, '15년말 최초 시범평가를 실시함.

-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복잡·다원화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개정안은 시행규칙의 규정사항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격상시키고, 보고의무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공공갈등의 전반적인 현황파악과 통합관리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고 대상으로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만 규정되어 출자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서울시와 관련된 갈등현황을 통합 조정·관리하기 위해서 출자기관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현재 서울시 출자기관은 서울관광마케팅(주) 1개 기관이며, 재단 법인(출연기관)으로 전환 중임.

다. 공공갈등 관리 업무 수행시 자치구와의 협력 등 신설(안 제19조)

- 안 제19조는 공공갈등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자치구와 협력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 (자치구 협력 등) 시장은 공공갈등의 예방, 진단, 조정 및 교육·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시의 “중점 갈등관리사업”(참고 2 참조) 내용을 살펴보면, 횡단보도 확충정비, 공영 주차장, 체육관 건립, 역사 주변 침수 방지 등 공공갈등의 대부분이 자치구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바, 개정안은 서울시의 공공갈등을 원활하게 해소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공갈등의 예방, 진단, 조정 및 교육·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를 자치구와 협력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8개의 자치구만이 공공갈등 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갈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연번	자치구	조례명	제정일	비고(주관부서)
1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2016.12.30	감사담당관
2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016.09.22	감사담당관
3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015.03.04	감사담당관
4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016.10.13	감사실
5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015.05.01	감사담당관
6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013.05.16	감사담당관
7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015.10.08	감사담당관
8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016.06.22	감사담당관

- 한편, ‘공공갈등 관련 예방, 진단’ 등의 사무는 자치구에서 자체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서 해소해 나갈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이미 자체적으로 공공갈등을 진단하고 조정하고 있는 자치구와 제도적 기반이 없는 자치구에 대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 실태 등을 점검·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시가 투자·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공공갈등 및 관계인 50인 이상의 집단 민원 발생시 : 즉시
2. 발생한 공공 갈등의 관리 현황 : 매 분기 말일
3. 기타 갈등예방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 : 수시

제19조와 제20조를 각각 제20조와 제21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자치구 협력 등) 시장은 공공갈등의 예방, 진단, 조정 및 교육·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평가해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시가 투자·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공공갈등 및 관계인 50인 이상의 집단민원 발생시 : 즉시 2. 발생된 공공 갈등의 관리 현황 : 매분기 말일 3. 기타 갈등예방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 : 수시
<신 설>	제19조 (자치구 협력 등) 시장은 공공갈등의 예방, 진단, 조정 및 교육·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수당지급 등)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 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 15조의 전문가, 전문 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의 범위 내에서 수 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당지급 등)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 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 15조의 전문가, 전문 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의 범위 내에서 수 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